

부속서 II  
미래 조치에 대한 유보

캐나다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캐나다의 유보목록은 제8.9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8.3조(내국민대우) 또는 제9.2조(내국민대우)

나. 제8.4조(최혜국대우) 또는 제9.3조(최혜국대우)

다. 제8.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라. 제8.8조(이행요건)

마. 제9.4조(시장접근), 또는

바. 제9.5조(현지주재)

2. 각 유보는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국내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유보사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라. **유보유형**은 유보된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마. **유보내용**은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바. **기존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8.9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에 따라, 유보의 **유보유형**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 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유보를 해석함에 있어 산업분류를 제외한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 내용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보다 우선한다.

5. 이 부속서의 목적상,

CPC는 1991년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제77호 임시중양품목분류에 규정된 중양품목분류(CPC) 번호를 말한다. 그리고

SIC는 1980년 캐나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제4판에 규정된 표준산업분류(SIC) 번호를 말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국민 대우(제9.2조)와 현지주재(제9.5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9.5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9.2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부속서 II**  
**캐나다의 유보목록**

<b>분야</b>	원주민에 관한 사항
<b>하위분야</b>	
<b>산업분류</b>	
<b>유보유형</b>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9.3조) 현지주재(제9.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7조) 이행요건(제8.8조)
<b>유보내용</b>	<b>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b>  캐나다는 원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권리 또는 우선권을 한국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 또는 한국 서비스공급자에게는 부인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b>기존의 조치</b>	캐나다법 1982 스케줄 B(U.K.), 1982, c. 11인 헌법 (Constitution Act), 1982



분야	어업
하위분야	어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산업분류	SIC 031 어업 SIC 032 어업 부수 서비스 CPC 882 어업 부수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9.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외국 어선이 캐나다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또는 항구에 진입하는 것 및 그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활동 면허와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어업법, R.S.C. 1985, c. F-14 연안어업보호법, R.S.C. 1985, c. 33 연안어업보호규정, C.R.C. 1978, c. 413 상업어업면허정책 캐나다 어업분야 외국인 투자정책, 1985

분야	정부재정
하위분야	증권
산업분류	SIC 8152 금융 및 경제 행정
유보사항 유형	내국민 대우(제8.3조)
유보내용	투자  캐나다는 캐나다 정부 또는 캐나다 지역정부가 발행한, 채권, 국채 또는 그 밖의 종류의 채무증권을 한국 국민이 취득, 매각 또는 달리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재정행정법, R.S.C. 1985, c. F-11

분야	소수집단에 관한 사항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9.2조) 현지주재(제9.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7조) 이행요건(제8.8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소수집단에 권리나 특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사회 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9.3조)  
현지주재(제9.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7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법 집행과 교정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 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기존의 조치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운송
산업분류	CPC에 정의되지 아니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장에 정의된 대로 항공기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유보유형	최혜국 대우(제9.3조)
유보내용	<p><b>국경 간 서비스무역</b></p> <p>캐나다는, 수리, 정비, 유지보수 설비의 승인 및 캐나다 등록 항공기와 그 밖의 관련 항공제품에 대하여 수행된 작업에 관한 그런 설비의 증명을 인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 국가의 조직, 항공당국 또는 서비스공급자와 선택적으로 협정이나 약정을 교섭할 권리를 유보한다.</p>

#### 기존의 조치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운송
산업분류	CPC에 정의되지 아니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장에 정의된 대로 항공운송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9.2조) 최혜국 대우(제9.3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는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p>SIC 4129 그 밖의 증건설</p> <p>SIC 4541 화물 및 여객 수상운송산업</p> <p>SIC 4542 페리산업</p> <p>SIC 4543 해양예인산업</p> <p>SIC 4549 그 밖의 수상운송산업</p> <p>SIC 4552 항구 및 항만 운영산업 (정박, 적재 및 그 밖의 항구에서의 선박운영에 한함)</p> <p>SIC 4553 해양구난사업</p> <p>SIC 4554 수로안내서비스, 수상운송산업</p> <p>SIC 4559 그 밖의 수상운송 부수 서비스 산업(내항 항만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함)</p> <p>CPC 5133/5223 수로, 항구, 댐 건설 및 그 밖의 수상공사</p> <p>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p> <p>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p> <p>CPC 745 수상운송 지원서비스</p> <p>아래 <b>유보내용</b> 부분에 규정된 그 밖의 상업적 성격의 해양 활동</p>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9.3조)  
현지주재(제9.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7조)  
이행요건(제8.8조)

## 유보내용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다음을 포함하여 연안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투자 또는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직접적으로 또는 캐나다 외부의 장소를 경유하여, 캐나다 영역 내의 또는 캐나다 대륙붕 위의 지점 간, 선박으로 상품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것, 그러나 캐나다 대륙붕 위 수역과 관련하여 캐나다 대륙붕의 광물 또는 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또는 운송에만 관련된 상품 또는 여객의 운송, 그리고
- 나. 선박이 캐나다 영역 내에서 상업적 성격의 기타 해양활동에 관여하는 것 및 대륙붕 위 수역과 관련하여 캐나다 대륙붕의 광물 또는 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또는 운송과 관련된 상업적 성격의 기타 해양활동에 관여하는 것

이 유보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서비스공급자의 현지주재요건, 외국 선박에 입시 연안해상운송 면허를 발행하는 기준 및 외국선박에 발급되는 연안해상운송 면허 수의 제한과 관련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사항은 그 중에서도 특히 지선서비스에 적용된다.

## 기존의 조치

연안무역법, S.C. 1992, c. 31  
캐나다 해운법, 2001, S.C. 2001, c. 26  
관세법, R.S.C. 1985, c. 1(2nd Supp.)  
관세 및 소비세 역외적용법, R.S.C. 1985, c. C-53



분야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하위분야	해양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산업분류	CPC 8676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주재(제9.5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9.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캐나다는 캐나다를 대신한 선박의 법정 검사 및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최혜국 대우(제8.4조)

유보내용 투자

캐나다는 1994년 1월 1일 전에 시행되었거나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캐나다는 다음과 관련하여 기존의 또는 미래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어업,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기존의 조치



부록 II-가  
GATS 제 16 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캐나다의 분야

다음 분야의 경우, GATS 제16조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에서 삭제:</p> <p><u>감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적 주재요건: 노바스코샤</li> <li>-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매니토바, 퀘벡</li> <li>-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온타리오</li> </ul> <p>서비스 공급형태 2에서 삭제:</p> <p><u>감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적 주재요건: 노바스코샤</li> <li>-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매니토바, 퀘벡</li> <li>-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온타리오</li> </ul>
건축설계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에서 삭제:</p> <p><u>건축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li> </ul>
엔지니어링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에서 삭제:</p> <p><u>컨설팅 엔지니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을 위한 상업적 주재요건: 매니토바</li> </ul> <p><u>엔지니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뉴펀들랜드앤라브라도, 노바스코샤</li> <li>-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li> </ul> <p>서비스 공급형태 2에서 삭제:</p> <p><u>컨설팅 엔지니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을 위한 상업적 주재요건: 매니토바</li> </ul> <p><u>엔지니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뉴펀들랜드앤라브라도, 노바스코</li> </ul>

	<p>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li> </ul>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에서 삭제:</p> <p><u>컨설팅 엔지니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을 위한 상업적 주재요건: 매니토바</li> </ul> <p><u>엔지니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뉴펀들랜드앤레브라도, 노바스코샤</li> <li>-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li> </ul> <p>서비스 공급형태 2에서 삭제:</p> <p><u>컨설팅 엔지니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을 위한 상업적 주재요건: 매니토바</li> </ul> <p><u>엔지니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을 위한 영주권 요건: 뉴펀들랜드앤레브라도, 노바스코샤</li> <li>-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li> </ul>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에서 삭제:</p> <p><u>공동체/도시계획</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li> </ul>
부동산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에서 삭제:</p> <p><u>공인감정인</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li> </ul>
경영컨설팅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에서 삭제:</p> <p><u>농학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li> </ul> <p><u>전문행정가 및 공인 경영 컨설턴트</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 전문 행정 기업</li> </ul> <p><u>산업관계 상담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li> </ul> <p>서비스 공급형태 2에서 삭제:</p>

	<p><u>농학자</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조사 및 경비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3에서 삭제:</p> <p><u>회사 및 직원 정보 조사</u> - 외국인 소유권을 전체 25퍼센트 및 개인 소유 지분 10퍼센트로 제한: 온타리오</p>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에서 삭제:</p> <p><u>토지 측량가</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노바스코샤, 퀘벡</p> <p><u>지각조사서비스</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p><u>과학기술분야전문가</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p><u>화학자</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p>서비스 공급형태 2에서 삭제:</p> <p><u>토지측량가</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노바스코샤, 퀘벡</p> <p><u>지각조사서비스</u> - 인정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기타 사업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에서 삭제:</p> <p><u>인증 통 · 번역사</u> -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p>서비스 공급형태 2에서 삭제:</p> <p><u>인증 통 · 번역사</u> - 직함 사용을 위한 시민권 요건: 퀘벡</p> <p>서비스 공급형태 3에서 삭제:</p>

	<p><u>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소유권을 전체 25퍼센트 및 개인 지분 10퍼센트로 제한: 온타리오</li> </ul>
쿠리어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3에서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수요심사[승인 관련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현재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조사, 서비스 확장을 위한 요건을 설정하는 시장 상황, 신규 진입자가 공공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인의 적합성, 의지 및 능력 포함)]: 노바스코샤, 매니토바</li> </ul>
일반 토목 건축공사	<p>서비스 공급형태 3에서 삭제:</p> <p><u>건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력발전소 개발허가 신청인 및 보유자는 온타리오에 설립되어야 한다.</li> </ul>
도매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1에서 삭제:</p> <p>어류가공품 마케팅(노바스코샤): 노바스코샤 거주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장관승인을 필요로 한다.</p>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p>서비스 공급형태 1에서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해운 제한</li> </ul>
도로여객운송	<p>서비스 공급형태 3에서 삭제:</p> <p><u>도시 간 버스 운송 및 정기 서비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 편익 및 수요 심사[승인 관련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현재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조사, 서비스 확장을 위한 요건을 설정하는 시장 상황, 신규 진입자가 공공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인의 적합성, 의지 및 능력 포함)]: 프린스 에드워드섬</li> </ul>
도로화물운송	<p>서비스 공급형태 3에서 삭제:</p> <p><u>고속도로 화물운송</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 편익 및 수요 심사[승인 관련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현재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조사, 서비스 확장을 위한 요</li> </ul>

	<p>건을 설정하는 시장 상황, 신규 진입자가 공공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인의 적합성, 의지 및 능력 포함): 브리티쉬 콜롬비아, 매니토바,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섬, 노바스코샤</p>
통신	<p>서비스 공급형태 3에서 삭제:</p> <p>노바스코샤: 어떠한 인도 마리타임 텔레그래프 앤 텔레폰 리미티드의 주식을 1,000 주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p>